#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7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일

## ▢ 제안 이유

○ 만주사변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 골자

○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함 (안 제2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충청북도지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안 제3조)

○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안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간사는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안 제7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 (안 제10조)

## ▢ 검토 의견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안 제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안 제3조)

-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안 제7조)
- 실무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안 제10조)

○ 따라서 만주사변(1931. 9. 18) 이후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 노무자, 종군위안부 등 피해 당사자들의 아픈 상흔을 치유하고, 피해와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실무의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스럽고 공감이 된다고 판단됨.

○ 다만,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관련 그 동안 우리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피해신고 건에 대한 확인방법,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확보대책과 업무수행의 적극성 보장을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